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윤미자 소유 (2025타경100280)
의뢰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법보좌관 이상호
감정평가서번호	통일(서부)X250122-3002호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사장 김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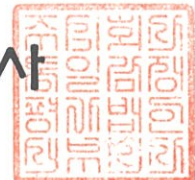


(주)통일감정평가법인 서부지사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43, 1층 1059호(일직동, GIDC)

TEL.02-899-9000

FAX.0505-182-4805



(구분건물)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김진호

김

진

호 (인)



(주)통일감정평가법인 서부지사 지사장 김진호 (서명또는인)



감정평가액	이억칠천사백만원정 (₩274,000,000.-)					
의뢰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법보좌관 이상호		감정평가목적	법원경매		
채무자	-		제출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경매4계		
소유자 (대상업체명)	윤미자 (2025타경100280)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 조건	-		
목표시근거	귀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25.01.24	2025.01.23 ~ 2025.01.24	2025.01.24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구분건물	1세대	구분건물	1세대	-	274,000,000
		이	하	여	백	
	합계					₩274,000,000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왕가연					
				왕가연	(인)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13-12 신이 모닝빌	연립주택 (8세대)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1층	178.82				
				2층	178.82				
				3층	178.82				
				4층	177.62				
				지층	174.62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현충로 24번길 9							
		동 소	413-12	대	일반상업지역	269.4			
				[내]	철근콘크리트조 제1층 제102호	79.07	79.07	274,000,000	비준가액 (공용면적 포함)
				1. 소유권	32.95	32.95			
			----- 대지권	269.4	269.4				
						토지·건물 토 지 : 건 물 :	배분내역 164,400,000 109,600,000		
	합 계			이 하	여	백	₩274,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의 개요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안양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신 이모닝빌 제1층 제102호, 1세대)으로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경매목적 감정평가입니다.

2.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3. 감정평가조건

없습니다.

4. 실지조사기간·내용 및 기준시점

가. 실지조사기간 및 내용

본건 실지조사기간은 2025년 01월 23일~2025년 01월 24일(2일간) 등이며, 실지조사 내용은 후첨 “감정평가요항표” 등을 참고 바랍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기준시점

본건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자인 2025년 01월 24일로 하였습니다.

5. 감정평가의 근거 및 방법 적용

가. 감정평가의 근거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감정평가 관련 법규, 감정평가의 일반이론 등에 따라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나.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1) 감정평가방법

- 부동산 및 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방식(방법)에는 ‘비용성’에 기초한 원가방식(원가법 및 적산법 등), ‘시장성’에 기초한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및 공시지가기준법 등), ‘수익성’에 기초한 수익방식(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이 있습니다.
- 원가방식이란 대상물건이 어느 정도의 비용이 투입되어야 만들 수 있는가라는 ‘비용성’에 근거하며, ‘공급측면’에서 비용과 가치의 상호관계를 파악하여 대상물건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 원가방식에는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사용료를 포함)를 산정하는 ‘적산법’ 등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비교방식이란 대상물건이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가라는 ‘시장성’에 근거하며, ‘실증적인 교환측면’에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가치의 상호관계를 파악하여 대상물건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 비교방식에는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의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임대료)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임대사례비교법)’,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 등이 있습니다.
- 수익방식이란 대상물건을 이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라는 ‘수익성’에 근거하며, ‘수요측면’에서 수익과 가치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대상물건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 수익방식에는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수익환원법’, 일반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수익분석법’ 등이 있습니다.

2)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 본건 구분건물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및 제16조 등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구분소유권의 대상인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인 토지를 일괄로 감정평가함에 있어,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본건 구분건물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검토하여야 하나, 본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인근에 가치형성요인에 있어 비교가능성이 높은 유사 부동산의 적정한 임대료수준의 포착이 어려운 점 등,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다른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시산가액과의 조정 없이,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평가전례, 경기동향 등을 종합 참작하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산정된 비준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한 후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6. 그 밖의 사항

- 본건의 위치, 면적 등 평가목록은 건축물 현황도면, 출입문의 표기 등에 의거하여 위치 확인하였습니다.
- 실지조사시 이해관계인 부재 및 폐문 등으로 인해 내부확인이 불가하여 집합건축물대장, 외부관찰 및 주변탐문 등에 의하여 평가하였습니다.
- 집합건물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고 있어 토지·건물의 구분평가가 곤란하나, 귀원의 명령 및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배분하여 구분건물평가명세표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대상 부동산의 개요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13-12 [도로명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현충로24번길 9]					
건물명 및 동·호수	신이모닝빌 제1층 제102호					
건물의 개 황	구 조 지 붕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사용승인 일 자	2002.05.08	
	연 면 적	888.7㎡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규 모	지하1층 지상4층		대지면적	269.4㎡	
	주 용 도	공동주택 (연립주택)		지 목	대	
구분		전유면적 (㎡)	주공용면적 (㎡)	분양면적 (㎡)	대지권 (㎡)	용도
기호	층/호수					
가	제1층 제102호	79.07	29.62	108.69	32.95	연립주택

건 물
사 진



Ⅲ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비준가액

1. 개요

본 건은 구분건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제반입지조건, 부근의 상황, 건물의 구조, 층별·향별·위치별 효용성, 관리상태 등 제반 가치형성요인과 인근지역 내 동유형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등을 종합 참작하여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토지의 소유권, 대지권을 일괄로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2. 비교사례의 선정

가. 비교사례의 선정기준

- ① 거래사정이 정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
- ② 기준시점으로 시점수정이 가능한 사례.
- ③ 대상물건과 위치적 유사성이나 물적 유사성이 있어 가치형성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사례 등.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인근 유사부동산의 거래사례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KAIS 등)

구분	소재지	건물명	동.호수	전유 면적 (㎡)	대지권 (㎡)	거래금액(원)	거래시점	비고
		용도				전유면적당단가 (원/㎡)	사용승인일	
#a	안양동 413-12	신이 모닝빌	3층 302호	79.07	32.95	273,000,000	2024.06.10	-
		연립주택				3,452,630	2002.05.08	
#b	안양동 413-12	신이 모닝빌	2층 201호	82.85	34.52	299,000,000	2023.02.08	-
		연립주택				3,608,930	2002.05.08	
#c	안양동 421-29	대창 그린빌	나동 3층 301호	63.94	37.0798	215,000,000	2024.03.15	-
		다세대주택				3,362,520	2003.10.22	
#d	안양동 421-29	대창 그린빌	가동 2층 201호	63.92	34.1826	239,000,000	2023.09.20	-
		다세대주택				3,739,040	2003.10.22	
#e	안양동 413-8	시대 맨션	4층 403호	60.61	28.736	200,000,000	2023.06.30	-
		연립주택				3,299,780	2003.03.31	
#f	안양동 392-8	대호 맨션C	3층 301호	64.32	30.445	240,000,000	2023.09.04	-
		다세대주택				3,731,340	2002.10.14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다. 인근 유사부동산의 평가사례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 KAPA HUB PLUS)

구분	소재지	건물명	동.호수	전유 면적 (㎡)	평가금액(원)	평가 목적	기준시점	비고
		용도			전유면적당단가 (원/㎡)		사용승인일	
#1	안양동 396-12	성화 맨션	3층 302호	76.96	232,000,000	담보	2023.02.14	-
		다세대주택			3,014,550		2003.03.31	
#2	안양동 396-3	성화빌라	3층 301호	78.15	242,000,000	담보	2022.10.21	-
		다세대주택			3,096,600		2004.01.20	
#3	안양동 421-29	대창 그린빌	나동 3층 301호	63.94	196,000,000	담보	2024.04.19	-
		다세대주택			3,065,370		2003.10.22	
본건 (2년 이내)		기호 (가) : 전례 없음						-

라.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인근 유사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근지역 내 본건과 유사한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가격수준은 입지여건, 전유면적, 층/호별 효용 등에 편차가 있으며 전유면적 당 3,000,000원/㎡ ~ 3,800,000원/㎡ 수준으로 조사됩니다.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마. 비교사례의 선정

상기 참고가격자료 중 비교사례선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물건과 같은 건물 내 위치하여 위치적·물적 유사성이 높으며 비교적 최근에 거래된 거래사례(#a)을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구분	소재지	건물명	동.호수	전유 면적 (㎡)	대지권 (㎡)	거래금액(원)	거래시점	비고
		용도				전유면적당단가 (원/㎡)	사용승인일	
#a	안양동 413-12	신이 모닝빌	3층 302호	79.07	32.95	273,000,000	2024.06.10	-
		연립주택				3,452,630	2002.05.08	

3.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거래사례에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가 반영되어 있거나, 거래 당사자가 시장에 정통하지 않은 등 수집된 거래사례의 가격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의 적절한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결 정 의 견	본건 인근 및 유사지역 내 부동산의 거래사례 및 시세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거래 당사자 간의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는 바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합니다.
사정 보정치	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시점수정

시점수정이란 비교사례의 거래시점과 대상물건의 기준시점이 불일치하여 가격수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비교사례의 가격을 기준시점의 가격수준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말하며, 본건 구분건물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른 월간동향 중 해당물건의 '매매가격지수'를 활용하여 산정합니다.

가. 매매가격지수 : 연립다세대 (경기 경부1권)

(출처 : KAPA HUB)

한국부동산원 R-ONE부동산통계시스템	시점		매매가격 적용지수	
			시점	지수
기준시점	2025.01.24	2024. 12월	99.3	
거래시점	2024.06.10	2024.5월	98.1	

나. 시점수정치

기 간	계산식	시점수정치
2024.06.10. ~ 2025.01.24	$99.3 / 98.1$ ≈ 1.01223	1.01223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가치형성요인 비교

가. 가치형성요인

가치형성요인	
항 목	세부항목
외부요인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대중교통의 편의성
	차량이용의 편의성
	생산자서비스 종사자 밀도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 등의 배치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등
내부요인	건물의 상태 및 각종 설비의 유무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 내 주차의 편리성 정도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건물의 규모 및 최고층수
	건물 전체의 임대료 수준 및 임대비율 등
호별요인	층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향별 효용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
	내부 평면 방식
	주출입구와의 거리 등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환가성, 안정성 등)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구 분	외부요인	내부요인	호별요인	기타요인	가치형성요인
기호(가) /비교사례(#a)	1.00	1.00	0.99	1.00	0.990
결정의견					

기호(가)

본건은 거래사례(#a)과 같은 건물 내 위치하여 외부요인, 건물요인 등이 유사하나 층별효용 등 호별요인에서 다소 열세하여 종합적인 가치형성요인은 본건이 열세합니다.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비준가액)

가. 산식

$$\text{비준가액} = \text{사례가격} \times \text{사정보정}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가치형성요인 비교}$$

나. 산출가액

구분	비교사례 전유면적당 단가(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형성 요인	전유면적 (㎡)	산출가액 (원/호)
가	3,452,630	1.000	1.01223	0.990	79.07	273,574,855

다.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구 분	전유면적 (㎡)	전유면적당단가 (원/㎡)	시산가액 (원/호)	비 고
가	79.07	3,465,284	274,000,000	-
합 계			<u>274,000,000</u>	

※ 거래관행 등을 감안하여 백만원미만은 반올림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V 감정평가액의 결정

1. 감정평가액의 결정의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산정된 비준가액을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거래동향, 평가 사례 및 평가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비준가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2. 감정평가액의 결정

구 분	수량	감정평가액(원)	비 고
구분건물	1세대	274,000,000	비준가액 (공용면적 포함)
감정평가액 합계		<u>274,000,000</u>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안양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으로서 제반 입지여건은 대체로 보통입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무난합니다.

(3) 건물의 구조

본건은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지하1층/지상4층 건물 내 제1층 제102호로서, 외벽 : 몰탈위 시멘팅,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마감 등입니다.

(4) 이용상태

본건은 연립주택(방3, 거실 및 주방, 화장실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5) 설비내역

본건은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 토지는 인근지 대비 완만한 경사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재 연립주택(신이모닝빌)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은 북동측으로 노폭 약6m 내외의 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안양초등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

특이사항 없습니다.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광역위치도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13-12 신이모닝빌 1층 102호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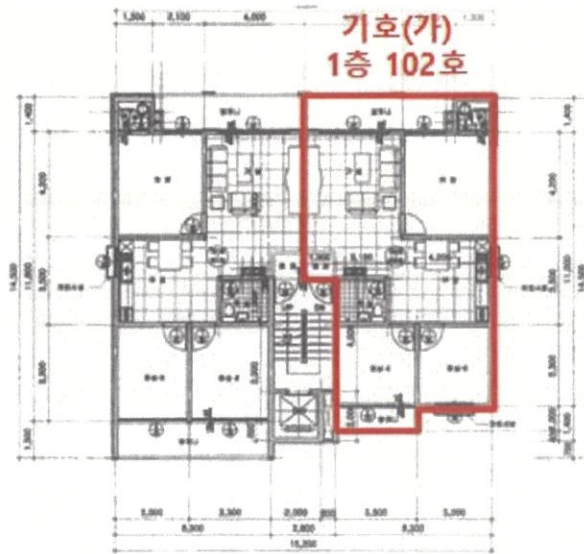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13-12 신이모닝빌 1층 102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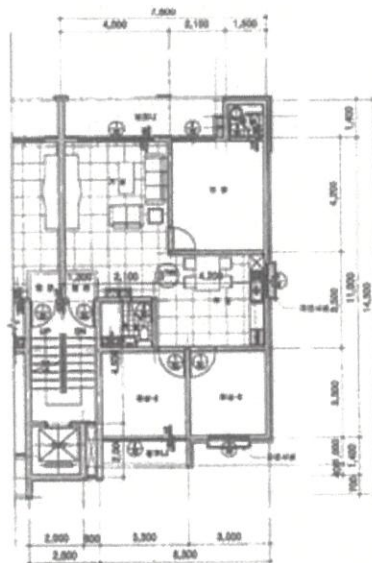


내부구조도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13-12 신이모닝빌 1층 102호
-----	--------------------------------------



<호별위치도>



<내부구조도>

사진용지



건물 전경



건물 출입구



기호(가) 현관문



주위환경 - 북동측 도로변

회 보 서

우)14353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43 제1층 제1059호 (일직동, 지아이디씨)
E-Mail : tongil4800@kapalnd.co.kr

TEL. 02-899-9000
FAX. 0505-182-4805

문서번호 : X250122-3002

시행일자 : 2025-01-24

수 신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법보좌관 이상호

참 조 : 경매4계

제 목 : 감 정 의 료 에 대 한 회 보

선 결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 저희 (주)통일감정평가법인의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귀 법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025.01.21자 귀 제 「2025타경100280」 호로 저희 법인에 의뢰하신 「윤미자 소유물건(2025타경100280)」 건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감정하여 회보합니다.

첨 부 : 1. 감정평가서 2 부
2. 청구서 1 부



(주)통일감정평가법인 서부지사장



수수료 청구서

(전화: 02-899-9000, FAX: 0505-182-4805)

문서번호 : X250122-3002

수신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법보좌관 이상호 귀하

제목 : 감정평가 의뢰에 대한 회신 및 수수료 납입통지

1. 2025.01.21 자 귀 제 「 2025타경100280 」 호로 의뢰하신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13-12 신이모닝빌 1층 102호 」 에 대하여 불임과 같이 평가하여 회보합니다.

2. 위 건에 대하여 감정평가 보수 기준에 의거 아래와 같이 평가수수료를 청구하오니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내역

과목	금액	비고
평가수수료	357,120	
실비	여비	212,000
	토지조사비	-
	물건조사비	10,000
	공부발급비	2,000
	기타 실비	4,000
비	소계	228,000
특별용역비	-	
공급가액	585,000	1,000원 미만 절사
부가세	58,500	
합계	643,500	
기납부 착수금	-	
정산청구액	643,500	



불임 : 감정평가서 2부

※ 송금처 ※

신한은행 : 100-034-104123(예금주:(주)통일감정평가법인 서부지사)

사업자등록번호 : 171-85-01138

(주)통일감정평가법인 서부지사

지사장 서부지사장

